

# 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44,324,000	16,329,720
일반회계	477,654,868	14,329,646
특별회계	66,669,132	2,000,074
공기업특별회계	31,504,968	945,149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1,504,968	945,149
기타특별회계	35,164,164	1,054,925
주택사업특별회계	12,200	366
의료보호특별회계	382,023	11,461
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	0	0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	100,000	3,00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787,000	23,610
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893,381	26,801
수질개선특별회계	31,938,723	958,162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	1,050,837	31,52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[채무부담행위사업] "해당없음"

제 4 조 [계속비사업조서] "해당없음"

제 5 조 [명시이월사업조서]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024,682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7,7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